



# 2006년도 노동부 업무계획

##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정책 여건

◇ 법적 규제와 전문가 주도의 현행 재해예방 시스템으로는 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잘 아는 노·사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자율적 해결을 지원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노사·NGO 등을 중심으로 정책입안시 참여요구와 정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어 정책의 신뢰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직후인 '82년 재해율 3.98%에서 '00년 재해율 0.73%로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 0.7~0.8%대를 유지

◇ 자율적 예방 관리가 어려운 산재취약계층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종·고용형태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단시간근로, 빈번한 이직 등으로 충실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며, 유해·위험작업의 사내하도급 확대 등의 경향으로 기업간 안전보건수준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가 전체 재해의 60%를 상회

\* '04년 재해분석결과 근속기간 1년 미만 재해자가 전체의 56.9%

◇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이 나타나는 직업병에 대해 적기에 예방적 대응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화학물질 등에 의한 전통적 직업병 외에 새로운 유형의 작업관련성 질환 증가가 예상된다.

### 1. 노사 협력적 산재예방활동 기반 마련 가. 산재예방활동에의 근로자 참여 촉진

(1)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을 통해 확산시킨다.

〈표 1〉 연도별 확대계획

근로자수	500~999인	300~499인	200~299인	50~199인
적용연도	'06년	'07년	'08년	'09년

※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 동수 구성의 '안전보건협의회'로 변경하고 작업환경개선 및 중대재해원인조사 등을 심의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2) 재정지원 사업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협의를 통한 “노사공동의 안전관리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노사가 합의하여 자율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할 경우에는 법상 사업주 의무 및 각종 점검 등을 면제한다.

(3) 산재통계 등 각종 제도개선 과제에 노사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노사정 제도개선 TF를 구성, 산재통계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 노사협력형 위험성평가제도란?

법률적 규제와 전문가에 의존해 온 기존의 재해예방 체제로는 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위험요인을 잘 아는 노사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잘 아는 근로자와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Total Risk Management) 활동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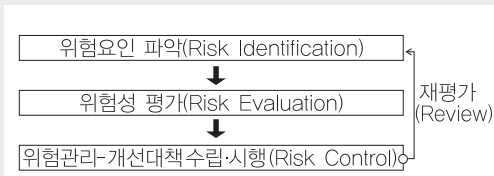
-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개선대책 수립이 가능하고, 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효과 거양이 가능하다.

▶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노사협력형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

-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기술지원사업 방식을 일회성 안전보건 점검 위주에서 탈피하여 사업주의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CLEAN 사업,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원 등)

- SOC 건설현장 및 조선업의 재해율에 의한 차등관리를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프로그램 수립·이행으로 전환한다.

- 현행 작업환경 측정제도를 포괄적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모니터링 제도로 개편하고, 노사 자율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작업환경 평가에 갈음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4) 지방관서 사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노사단체와 협의하는 등 지역단위 노사협력적 산재예방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 나. 노사협력형 재해예방활동을 위한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1) CLEAN 사업 등 재정, 기술지원 사업에 위험성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작업환경측정제도의 혁신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고 근로자 교육효과를 제고한다.

## 2. 산재취약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

### 가. 산재취약근로자 특성별 안전보건관리 실시

#### (1) 비정규직

① 전국 6대 광역권에 교육정보센터(안전공단)를 설치, 소규모·고위험 사업장에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컨설팅서비스 제공

② 권역별로 산업과 재해유형을 고려한 특성화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교육용 버스를 이용한 현장근로자 순회교육 강화

③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실태 점검확대('05년 주물 등 9개업종 → 석유화학 등 업종 추가)

④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 추진(우선 건설업 노사정 협의체 운용을 통해 시행방안 논의)

#### (2) 외국인

① 취업 전에는 취업교육 실시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교육 실시(인력공단, 국제노동재단의 외국인취업교육과정(20시간)에 포함)

② 취업 후에는 밀집지역 업종 중심으로 노사에 대한 교육지원과 자국어로 된 교육·기술자료·비디오 등 제작·보급

③ 불법취업 외국인도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지원 센터와 협조, 교육강사·자료를 지원(외국인근로자센터, 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전국 200개 단체 활용)

#### (3) 고령자

① 연령·근로조건별 특화된 교육자료를 개발, 다수고용사업장에 배포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별 세미나 및 방문교육 실시

② 단순반복 및 중량물 취급작업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건강관리 실시 지도

### 나.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역량 강화

(1) 재정지원사업을 통합·개편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반기) 한다.

① 유사·중복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실효성을 제고<CLEAN사업(1천억원), 고소음(35억원), 근골격계질환예방(60억원) 등 안전보건분야 재정지원사업을 일원화>

② CLEAN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발전적으로 반영한 안전보건관리지원 종합프로그램을 마련(노사가 협력하여 안전관리개선방안 마련시 안전보건컨설팅, 시설 개선비용 지원)

(2) 기술지원 사업에 외국인근로자 등 산재취약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추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① 지원방식도 법 위반사항 지적 위주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

② 소규모 건설업체의 본사(1천개소, 종합컨설팅)-건설현장(3천개소, 기술지원) 연계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

(3) 모기업 협력업체 재해예방 상생협력 협약 체결 활성화를 위해 모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교육강사, 교재 등을 지원한다.

① 모기업 협력업체 근로자간 안전보건 수혜 격차 정도를 조사하여 시정권고하고, 하도급계약시 불리한 조건 삭제 지도

(4) 산재발생 위험성이 높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술지도 및 CLEAN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50인 미만 사업장)한다.

### 3. 대형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 가. 업종별 사망재해예방 활동 강화

(1) 화학(PSM 이행상태 평가), 조선(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 건설(취약시기 점검) 등 업종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2) 사망재해다발 작업을 기존 10대 작업에서 20대 작업으로 확대하여 노·사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한다.

(3)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제도 도입으로 사망재해 예방 성과를 거양한다.(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

#### 나. 대형사고 원인조사 및 대응능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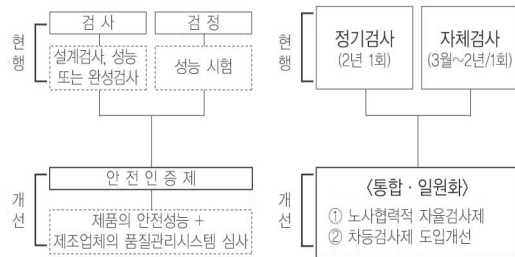
(1)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업주의 중대재해 보고시간을 단축하고(예 : 24시간 → 8시간), 발생사실 조기확인과 현장 보존을 위해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2) 노동부(본부, 지방노동관서)-안전공단의 체계적 역할분담으로 대형사고 발생시 2차 재해예방조치 등 신속히 대응한다.

#### 다. 위험기계 방호장치·보호구의 근원적 안전성 강화

(제도단계의 검사·검정제도 통합)

(사용단계의 정기·자체검사제도 통합)



### 4. 산업환경에 부응하는 직업병 예방시스템 구축

#### 가. 직업병 예방기반 강화

(1)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세분화 및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할 것이며, 이에 일환으로 '05년 연구결과를(84종)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화학물질별 노출기준을 개정한다.

(2)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 사업장은 불시 작업환경 측정, 발암성 물질에 대한 허용기준 설정 등 작업환경 관리를 내실화 한다.

(3) 특수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수첩 소지자의 검진항목 등 건강진단체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관련 TF 구성) 한다.

(4) 관리항목 측정방법 등 사무실 공기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05년 연구결과 활용), 전통적 직업병 예방체제를 강화한다.

(5) 석면제품의 대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제품별로 단계적 제조·수입 등의 금지를 추진한다.

① 석면분석기관을 육성하여 위해성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의 유해성,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 강화

② 석면취급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상제도 안내,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Q&A 등 제작 배포

(6) 소음발생 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감독 강화, 고소음 사업장 DB관리를 체계화한다.

(7) 특수업종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① 의료기관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교육, 홍보, 기술자료 개발 및 보급, 전담기술지원팀 운영 등 추진

② 실태조사를 토대로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범정부적 건강 보호방안 강구

(8) 광업 진폐 근로자 보호 사업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 나. 작업관련성 질환의 효과적 예방

(1) 근골격계질환자 다수발생 및 부담작업 과다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밀 유해요인 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기법 등 맞춤형 예방 기술지원 즉, 고위험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 지원을 '05년 2,000개소에서 '06년 2,500개소로 확대 제공한다.

① 중소기업 사업장의 노·사가 함께하는 근골격계질환 상시 예방체계 구축 촉진 - 노·사가 공동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작업환경 개선비용 등 운영지원(400개소 60억원)

②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 기준 등 예방법규의 합리적 개선 - 유해요인조사의 주기(3년) 적절성 등

(2)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선형질환(고혈압, 당뇨 등) 다수발생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전문기관의 발병위험도 평가에 기초한 맞춤형 건강관리 기술을 지원(1,500개소)한다. 